

#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2.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1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 8. 18.

다. 상정일자: 제278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8. 2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윤옥진 물관리과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및 용어 정비
- 보험 목적물 대상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보험료 지원 대상별 한도 금액(기준)명시 추가(안 제6조제3항)
- 제6조제3항 추가에 따른 명시 불필요로 인한 삭제(안 제7조)
-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안 제8조)

## 다. 참고사항

### ○ 관계 법령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입법예고: 2025. 7.10.~ 7.30 (제출된 의견 없음)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① 주요 개정내용

#### ○ 제1조 (목적)

- 「풍수해보험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풍수해보험료”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 법령명칭 및 용어 정비

#### ○ 제2조 (정의)

- 제1호: “자연재해 중” → “자연재해에 포함되는 재해”로 표현 변경
- “강풍·풍랑·해일(海溢)” 등을 자연재해 범위에 추가
- 제2호 신설: “지진재해” 정의 규정 추가
- 제3호, 제4호 번호 재정리
- 기존의 “풍수해보험” 정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수정

#### ○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풍수해” → “풍수해·지진재해”로 용어 통일

#### ○ 제4조 (보험료 지원 대상)

- 제2호: “건축물” → “사업장의 건축물”로 명확화

- 제6조 (보험료 지원금의 신청·지원)
  - 제1항: 용어 수정 (“풍수해보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관련 법령 인용 변경: 「풍수해보험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제3항 전부 개정: 보험료 지원 한도 기준을 행정안전부 실무편람에 따라 정함
- 제7조
  - 삭제됨 (중복 규정 또는 불필요 조항으로 판단)
- 제8조 (보험가입)
  - 조문 제목 변경: “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 “보험가입”
  - 내용 중 “풍수해보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수정
- 제9조제2항
  - 용어 정비: “풍수해보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제11조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제목 변경: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 조문 내 용어 일괄 정비

##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지진·지진해일 등 지진재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행안부 실무편람’을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 한도를 설정한 점은 주민 체감도 및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의 법적 일관성과 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풍수해보험 조례의 법적 틀이 구비되어 있고, 매년 이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고 있으나 실제 집행률은 낮아 실효성이 주민 체감도와 직결되고 있음. 따라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와 대상 맞춤형 안내, 피해 고위험군의 선제적 가입을 유도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